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00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김미애 · 이달희 · 이현승
성일종 · 조경태 · 강승규
김기현 · 강명구 · 송석준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시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이나 주민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이루어지거나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허위 표시되는 경우, 집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율과 제재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대표성 사칭이나 허위자료 유포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도 기망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 및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항제4호마목, 제7조제2항, 제16조제4항제4호·제5호 및 제6항 신설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소(단체인 경우 단체의 소재지)

마. 주최자 및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을 “통고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자료 요청은 보완할 사항과 소명할 자료를”로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제1항제4호마목에 대한 기재사항이 명백히 허위하고 의심되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근거를 소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에”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 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5. 집회 또는 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⑥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말한다) 및 연락처 등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 라. (생략)

<신설>

5.·6. (생략)

② ~ ⑤ (생략)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최자 및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

5.·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제1항제4호마목에 대한 기재사항이 명백히 허위하고 의심되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근거를 소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고 및 제2항에 따른 소명 자료 요청은 보완할 사항과 소명할 자료를-----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신설>

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 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5. 집회 또는 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⑤ (현행과 같음)

⑥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말한다) 및 연락처 등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 설>

② (생 략)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

항을 위반하여 홍보물에 주최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기재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